

제 30차
이사회 회의록

2013. 2. 28.

한국장학재단

제30차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□ 회의일시 : 2013년 2월 28일(목) 15:00 ~

□ 회의장소 : 한국장학재단 24층 대회의실

□ 출석이사 : 재적인원 12명 중 10명 참석
(이사장 1, 상임이사 2, 비상임이사 7)

- (이사장) 이경숙 이사장
- (상임이사) 권광호 상임이사, 김남일 상임이사
- (비상임이사) 송기동 이사(代 한위전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),
김지한 이사(한화증권 전무), 김병주 이사(영남대 교수),
이길순 이사(신구대 교수), 이영 이사(한양대 교수),
정선양 이사(건국대 교수),
이봉화 이사(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)

※ 금만수 상임감사 참석

□ 불참이사 : 2명

- 조경규 이사, 고승범 이사

□ 상정안건

- 보고안건(1건)

• 제30-1호 2012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

- 의결안건(3건)

• 제30-1호 2012 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(안)

• 제30-2호 회계규정 개정(안)

• 제30-3호 2012년도 예산 이월 계획(안)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개회선언·성원보고

-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제30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.
- 간사(경영기획실장)로부터 성원보고(총 10명 참석)를 받음.

□ 전차회의 결과 보고

- 간사로부터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후,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 보고를 원안 접수함.

□ 회의결과

- 보고 30-1호 2012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 : 원안 접수
- 의결 30-1호 2012 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(안) : 원안 의결
- 의결 30-2호 회계규정 개정(안) : 원안 의결
- 의결 30-3호 2012년 예산 이월 계획(안) : 원안 의결

□ 보고안건 제30-1호 : 2012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

(보고자: 감사실장)

가. 안전 주요내용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'2012년 연간 감사결과'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,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
- 주요 내용
 - 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실적
 -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
 -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 실시 현황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재단 설립 이전 설립준비위원회의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과 내부감사 강화로 징계건이 증가하였음.
- '적극행정 면책제도'란 재단 직원이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가 다소 부당하더라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최대한 감안하여 면책하여 준다는 규정임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접수

□ 의결안건 제30-1호 : 2012 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(안)

(보고자: 재무관리부장)

가. 안건 주요내용

- 「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'2012 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(안)'을 이사회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함
- 주요 내용
 - 통합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
 - 주요 결산 결과
 -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
 - 이연법인세자산(부채) 계상 및 선납법인세 환급 추진
 - 감가상각, 연차유급휴가, 비상장유가증권 평가 등 기타 사항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감사인의 의견으로 당기의 재무제표가 2012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,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30-2호 : 회계규정 개정(안)

(보고자: 재무관리부장)

가. 안건 주요내용

- '13년부터 도입 의무화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의 반영과 종전 회계규정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- 개정 주요 사항
 - 회계 업무 관련 규정의 보완
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반영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30-3호 : 2012년도 예산 이월 계획(안)
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)

가. 안건 주요내용

- 2012년 예산 대상사업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처리를 확정하고자 함
- 주요 내용
 - 2012년도 예산 이월 규모
 - 주요 이월 예산 내역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IT 구축 사업의 특성상 계약금을 선금, 중도금,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임. '12년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음.
- 예산 집행 일정에 맞추어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음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폐회선언